

구성원 소개

최문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형사, 부동산, 건설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사건, S그룹의 펀드출자 관련 업무상 횡령 사건, Y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M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P그룹 관세법위반 관련 사건, S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등 다수의 기업형사사건에서 상당 부분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고, A시장 뇌물 사건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뇌물 등 사건에서 상당 수 무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아파트 하자 소송사건을 수행한 바 있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관련 소송도 수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수차례 강의한 바 있고, 주택관리사시험 출제위원(2007년)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5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과정

경력

2004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2005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실무간사
2005~2007	누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08~2013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14	문화체육위원회 제재 자문
2015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실무 강사
201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정 수료
2019~현재	수협중앙회 감사실 자문
2019~현재	수협중앙회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TEL.
02-3479-7840

MAIL.
mkchoi@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일반상사·민사소송]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기업형사] 사유지의 통행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어촌계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행정]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대부업등록갱신 반력처분에 대해 C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전부 승소판결

[자문]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해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 인수 완료

[조세]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금융소송
행정소송

민사

-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신라저축은행 신디케이트론 관련 소송
- 포천 A골프장 인수 관련 체육시설법 쟁점 소송
- 토마토저축은행 대출 관련 분쟁소송
- 동양증권 사외이사 책임 관련 소송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관련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
- 기타 일반 민사, 상사 사건

부동산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적정성 관련 소송 다수
-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 다수
- 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 손해배상소송 다수
-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
- 일제시대 사정명의자 관련 토지소송
-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관련 소송

형사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모그룹의 펀드출자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
- 모 조선그룹 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다수
-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뇌물 사건 다수
- 대형할인마트 개인정보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건설·부동산

경영권 분쟁